



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2-4-39
제정일자	2022. 9. 19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지역 사회·지역산업·국가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교육과정이라 함은 본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에 맞추어 정한 교육방침에 의해 종합적으로 계획한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을 의미한다.

② 전공교과 구성단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직업기초교과목 : 모든 직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신안산대학교 인재상 및 직업 기초역량이 융합된 교과

2. 직무기반교과목 : 학과 교육 목표에 기반하고 직무수행을 위해 연관역량을 기반으로 한 이론 교과 및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습교과의 전공교과

3. 일반교과목 : 학과 교육목표에 기반하고 모든 직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교과

4. 융합교과목 : 융복합 매트릭스 실현을 위해 타 학과(전공)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 또는 해당 학과 학생을 위해 타 학과(전공)의 과목을 직접 설계, 운영하는 교과

5. 대학핵심역량교과목 : 모든 직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신안산대학교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과 <2022. 11. 24. 신설>

제3조(교육과정 편성) ① 본 대학의 교과구분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일반교과로 이루어지며 교양 교과는 교양 선택과 교양필수로, 전공교과는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눈다.

② 학과별 전공교과 교육과정표의 총 편성학점은 70학점(3년제는 102학점) 이하로 한다. 단 장기 현장실습은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③ 교양 교육과정은 전공학과에서 편성하며 매학기 총 편성학점은 2년제는 6학점, 3년제는 10학점으로 한다. <2022. 11. 24. 개정>

④ 교양교과는 직업기초역량 교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전공교과의 시수의 50%이상은 실험실습으로 편성하되, 인문사회계열은 30%이상으로 편성한다.

⑥ 전공교과의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발,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과정 개발) ① 교육과정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하고 정규 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에 적용한다.

1. 내·외부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(교육과정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졸업생·산업체 요구조사 분석, 교양교육과정 학과별 직업기초영역 수요조사)

2. 인재양성유형설정 및 교육목표수립

3. 직무정의

4. 직무모형설정

5. 직무별 역량검증

6. 교과목 도출

7.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

8. 역량 교과목 연계성 기술

9.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

② 각 학과에서는 역량기반 학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과정개발은 학과별 3년 주기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운영성과 및 산업체 동향 등에 따라 그 시기를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④ 교육과정 개발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과명 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우(단, 학과명 명칭이 단순 변경으로 인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없을 시 미개발 가능)
2. 인력양성유형 변경으로 인한 경우
3. 학과를 신설한 경우
4. 학생 보호조치 대상 학과(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없을 시 미개발 가능)

제5조(교양교육과정개발) ① 교양교육과정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정규 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에 적용한다.

1. 기초학습능력(각 개별 전공교과목 연계 교육과정)
2. 직업기초능력
3. 신안산대학교 인재상 및 학과 교육목표

② 각 학과에서는 역량기반 학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과정 개편) ①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교과목을 신설, 폐지, 폐지 후 대체의 방법으로 개편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 개편은 교무처장이 지정한 기간에 학과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, 교육과정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제출 후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③ 대체과목을 지정하는 것은 전공필수 과목을 폐지하고자 할 때만 가능하며, 대체과목은 기존 과목과 교육과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으로만 가능하다.

④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역량기반 학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) ① 학과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본 규정 제4조 3항에서 정한 교육과정 개발주기가 완료되기 1개월 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정책·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품질위원회는 학과별 교육과정개발보고서를 심의·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,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는 인증결과와 교육과정 편성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심의하고 평가한다.

③ 교육과정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증
2. 보완
3. 미인증

④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⑤ 학과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에 인증결과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과정 품질관리(CQI)) ① 학과별 교육품질위원회에서는 교육품질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교육품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과목 CQI 보고서
2. 학과 CQI 보고서

②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보고서의 작성 주기는 다음과 같다.

1. 교과목 CQI 보고서 : 연 2회(학기당 1회)

2. 학과 CQI 보고서 : 연 1회

- ③ 교육품질위원회에서는 학과 CQI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여 교육품질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평가결과는 학과 교육품질 개선자료로 활용한다.

제9조(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 절차) 교육과정의 개편 및 편성은 교육과정정책·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, 공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